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92호

성내3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92호(2011.4.14.)로 결정·고시된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내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.

2017년 11월 9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. 해제기한 연장구역

구 분	구 역 명 (정비사업방식)	위 치	면 적(㎡)	비고
기정	성내3재정비촉진구역 (도시환경정비사업)	강동구 성내동 48-6번지 일대	6,729	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92호 (2011. 04. 14.)

나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구 분	구역의 명칭 (정비사업방식)	위 치	면적 (㎡)	시행자	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
기정	성내3재정비촉진구역 (도시환경정비사업)	강동구 성내동 48-6번지 일대	6,729	조합, 토지등소유자 등	2017. 01. 31.
변경 (연장)	성내3재정비촉진구역 (도시환경정비사업)	강동구 성내동 48-6번지 일대	6,729	토지등소유자 등	2019. 01. 31

※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인근 성내1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성 고려할 것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(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)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주거사업과(02-2133-7222), 강동구 도시계획과(02-3425-6053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